

1. 5-06-0393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변경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용자상담 및 신청서 (생 략)</p> <p>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p> <p>본인은 ~ (이하생략)</p> <p>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p>	<p>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용자상담 및 신청서 (좌 동)</p> <p>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p> <p>본인은 ~ (이하생략)</p> <p>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p>									
(생 략)	(좌 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d9d9;">중도상환수수료</td> <td> $\frac{\text{중도상환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 \{ \text{기본수수료율 연 ()\%} + \text{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 연 (~)\%} \} \times \text{대출잔여기간}}{365} (\text{외화대출은 } 360)$ </td> </tr> </table>		(생 략)	중도상환수수료	$\frac{\text{중도상환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 \{ \text{기본수수료율 연 ()\%} + \text{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 연 (~)\%} \} \times \text{대출잔여기간}}{365} (\text{외화대출은 } 36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td> <td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d9d9;">중도상환수수료</td> <td>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는 $\frac{\text{중도상환대출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365} \times (\text{대출잔여일수} \div \text{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율은()%로 적용합니다. </td> </tr> </table>		(좌 동)	중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는 $\frac{\text{중도상환대출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365} \times (\text{대출잔여일수} \div \text{대출기간})$ 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율은()%로 적용합니다.	<p>-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변경</p>
	(생 략)									
중도상환수수료	$\frac{\text{중도상환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 \{ \text{기본수수료율 연 ()\%} + \text{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 연 (~)\%} \} \times \text{대출잔여기간}}{365} (\text{외화대출은 } 360)$									
	(좌 동)									
중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는 $\frac{\text{중도상환대출금액} \times \text{중도상환수수료율}}{365} \times (\text{대출잔여일수} \div \text{대출기간})$ 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율은()%로 적용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생략)</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기타 () (좌동)</div>	
<p>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생략)</p> <p>제3조 중도상환수수료</p> <p>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u>대출금 또는 한도거래여신의 약정한도를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 또는 해지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u></p> <p>② 「<u>시장금리 차이 수수료율</u>」은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약정일(또는 연장일, 대한일, 분할실행일), 시장금리연동 대출은 최근 금리변동주기 응당일의 기간별 시장지표 금리(CD, 금융채, 국고채, LIBOR등) 유통수익률에서 대출기일전 (분할상환대출은 분할상환 기일전) 상환일의 전일자 기간별 시장지표금리 유통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적용합니다.</p> <p>③ <u>대출잔여기간은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한 경우 연장한 대출기일 포함)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경우 365(외화대출은 360)로 합니다.</u></p> <div style="text-align: right;">(신설)</div> <div style="text-align: right;">(신설)</div> <p>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대출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p>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좌동)</p> <p>제3조 중도상환수수료</p> <p>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u>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u></p> <div style="text-align: right;">(삭제)</div> <p>② <u>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대출잔여일수</u>」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u>대출기간</u>」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 <u>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u> <p>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p>한도거래여신관련 내용 삭제</p> <p>시장금리차이수수료율 폐지</p> <p>-항제상 -대출잔여일수 산정방식 변경</p> <p>-대출기간 산정방식 변경</p> <p>-항제상 -문구수정</p>

<p>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p> <p>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p> <p>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p> <p>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p> <p>제4조 ~ 제16조</p> <p>(생 략)</p> <p>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생 략)</p> <p>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p> <p>(생 략)</p> <p>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기업용) (포괄계약)</p> <p>(생 략)</p>	<p>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p> <p>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p> <p>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p> <p>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p> <p>제4조 ~ 제16조</p> <p>(좌 동)</p> <p>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좌 동)</p> <p>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p> <p>(좌 동)</p> <p>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기업용) (포괄계약)</p> <p>(좌 동)</p>	
---	---	--

2. 개정약관시행일 : 2012.12.17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시행즉시 적용

- 통합약관정서에 포함되는 여신거래약관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상상품이 아니므로 거래내용이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 시행즉시 적용.